

청 원 요 지 서

청 원 건 명	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의 건		
청 원 인	주 소	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
소 개 의 원	옥 영 복 의원		
접 수 일 자	2008. 1. 22		

청원의 취지

1. 청원요지

다대1동 산71, 산71-1번지 상의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의 건

2. 청원이유

가. 야산을 깎은 나대지에 크러셔기계를 설치하여 기계소음과 분진을 품어내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공장이 동네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은 동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

나.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 이전에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 몰래 인가해 준 것은 특혜성이며, 주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파괴함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.

다.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답사, 주민의사 타진, 주변 환경 조사 등도 하지 않고 공장인가를 해 준 것은 권한 남용이기에 건설폐기물 공장인가는 취소, 철회되어야 함

청원 소개의견서

청원건명	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의 건		
청원인	주소	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	
	성명		주민등록번호
소개의원	옥영복 의원		
소개년월일	2008. 1. 15		

소개의견

- 사하구청에서 동네 한복판에 건설폐기물 공장을 인가해 줌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
- 부산시와 사하구청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인가해 준 특혜성이 짙고,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건설폐기물 공장인가는 마땅히 근절,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원으로써
 1. 피청원인 육성산업(주)는 야산을 깎아 지붕도 없는 나대지에 크라사기계를 설치하는 등 기계소음과 분진을 품어내고, 마사 세척후의 폐수처리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니 공장인가가 취소되어야 함
 2. 또한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 시에는 주민동의가 필수적인데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이를 간과하고 주민들 몰래 특혜성 인가를 해준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함
 3.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답사, 주민의사 타진, 주변환경 조사 등도 하지 않고 공장인가를 해준 것은 권한 남용이기며, 공장인가로 인한 기계소음,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건설폐기물 공장인가는 취소, 철회되어야 함